

## 머리말

이 책의 첫장을 당신이 펼쳐서 읽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민법 공부를 처음 시작했거나, 아니면 예전에 시도했다 포기했던 민법 공부를 다시 시작했을 것이다. 어쩌면 이번 이 법학에 대한 마지막 도전이라는 심정으로 반신반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 당신은 민법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어떤 사정이 있어서 – 가령 로스쿨 진학을 계획하거나, 어떤 자격시험을 준비하려고 – 썩 마음이 내키지는 않지만 민법 공부를 시작할 결심을 했다.

“민법을 처음 공부하는데,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을까?”, “법학을 공부할 만한 적성이 과연 나에게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이 머리 속을 스쳐 지나간다. 그래도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이 책이 다른 민법 교과서만큼 아주 두껍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완전 처음이든 아니면 재도전이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은 그 자체로 소중하다. 내 삶의 제한된 시간과 노력을 어렵게 할애하여, 그것을 민법 공부에 투여하기로 스스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간절한 나의 발원(發願)이 어떻게 하면 소중한 결실을 얻을 수 있을까?

‘첫 단추를 잘 끼는 것이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법과 관련된 직업을 준비하려고 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첫 단추는 바로 민법이다.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민법은 법 중에서 가장 양도 많고 내용도 난해하다. 일단 좀 쉬운 내용부터 시작하여 차츰 어려운 주제로 나아간다면 공부하기에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민법이나 민법 교과서는 그렇게 친절하지 않다. 민법은 당신의 두뇌가 충분히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주

지 않는다. 민법은 가장 어려운 내용으로 처음부터 ‘혹’ 들어간다.

교재와 강의 모두, 민법 공부는 ‘민법 총칙’으로 시작하는 것이 정석으로 되어 있다. 민법 총칙을 배운 후에는, ‘재산법’ 세 과목(물권법, 채권법 총론, 채권법 각론)을 공부하고, 이어서 ‘가족법’ 두 과목(친족법, 상속법)을 배움으로써 마무리한다.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은 무엇일까? 내용 면에서 보면 채권 총론이 가장 복잡하지만, 배우는 순서를 고려할 때 학습자가 가장 어렵게 느끼는 과목은 민법 총칙이다.

아니, 왜 이 어려운 과목을 제일 먼저 가르치냐고 불만을 가지겠지만 예외 없이, 모든 학교에서 민법 공부는 민법 총칙으로 시작된다.

‘민법 총칙’의 비밀은 어느 정도는 그 이름에서 벌써 드러난다. ‘총칙(總則)’은 ‘공통적인 부분’을 말한다. 민법을 수식으로 표현하여 ‘ab(물권법) + ac(채권법) + ad(친족법) + ae(상속법)’이라고 한다면, 공통된 부분을 괄호 앞으로 끄집어 내어서 ‘민법 = a(b + c + d + e)’로 표현할 수 있을텐데, 이 괄호 앞의 부분(즉, a)이 바로 총칙이다.

민법 전체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칙을 ‘먼저’ 배우는 것인데, 아직 뒷부분(ab + ac + ad + ae)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총칙을 배운다는 점이 문제이다.

민법의 내용에 대하여 아직 아무런 지식도 없는 초보자에게 특히 총칙은 어렵게 느껴진다. 이상적인 학습의 순서는, 재산법과 가족법을 먼저 배우고 나서 총칙을 가장 나중에 배우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이다.

그래서 민법부터 시작하여 법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 나가려던 당신의 거창한 결심은, 민법 총칙이라는 완고한 방파제에 부딪혀 한풀 꺾이고 만다. 민법 총칙을 통해 시작되는 법 공부는 왜 이다지도 어렵고 낯설까?

대학생 시절의 저자는 민법 총칙이라는 첫 단추를 심하게 잘못 끼었다. 그 여파로 민법 전반은 물론이고 법 공부 자체를 싫어하게 되었다. 법 공부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는 대학 시절 전체를 지배했다. 기계적으로 법학 수업을 듣고 학점을 따기는 했지만, 법 공부에 대해서는 애정도 미련도 없었다. 법대를 졸업할 때가 가까워지자, 이후에 무엇을 할지가 너무나 막막했다. 여느 친구들처럼 사법시험을 열심히 준비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법이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한 적성을 발견한 것도 아니었다. 법학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다른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졸업 이후의 미래가 두렵게 느껴졌다.

나는 대학 졸업 이후 법과는 완전히 무관한 삶을 살 예정이었다. 그러나 우연한 계기 를 통하여 나는 법대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다. 대학원 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독일 정부가 주는 장학금을 받아 독일에서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고, 결국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에는 이화여자대학교(2003년부터 법과대학, 2009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 제사·로마법·민법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20년 이상 일해왔다.

대학 시절에 민법 공부에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못했던 나는, 역설적이게도 학생들에게 민법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면서, 대학 시절 자신을 좌절에 빠뜨렸던 바로 그 질문, 즉 민법 총칙이라는 첫 단추를 어떻게 퀘면 좋을지 하는 문제를 더 이상 회피할 수는 없었다.

민법에 대한 실패는 과거의 나 한 명이면 충분하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민법을 포기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내가 맡은 민법 총칙 수업을 통하여, 민법 이 결코 어렵지 않고 충분히 공부해 볼 만하며, 오히려 무척이나 재미있다는 생각을 학생들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책은, 민법 특히 민법 총칙은 어렵고 지겹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민법 공부의 재미를 독자에게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법이 어려워서 법 공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법이 재미있어서 다른 법도 더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고 싶다. 올바른 방법과 적절한 조언이 뒷받침된다면, 누구든지 민법 총칙을 ‘즐겁게’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을 쓰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대학 시절 저자가 민법과 법학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을 때조차도, 법학 공부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셨던 박병호 교수님, 대학원 시절의 지도교수셨고 올바른 학문하는 자세의 모범을 보여주신 최병조 교수님, 독일 유학 시절 지도교수로서 생활과 학문 모든 면에서 나를 이끌어주신 베르톨드 쿠피쉬(Berthold Kupisch)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이화여대에서 교수로서 일을 하기 시작한 이후로 꾸준하게 가르쳐주고 이끌어주신 송덕수 교수님께 특히 감사드린다. 이 책의 많은 부분은 송 교수님의 너무나도 훌륭한 교과서들을 모범으로 하여 서술되었다. 저자가 민법 총칙에서 처절하게 실패했던 것이 자신의 잘못만이 아니라, 잘못된 교수·학습 방법에도 원인이 있음을 일깨워주신 오수

근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특히 오 교수님의 훌륭한 교과서(『기업경영과 법』, 홍문사, 2021)는 이 책에 대한 직접적인 자극이자 격려가 되었다.

이 책의 출간을 흔쾌히 결정하고 교재개발지원까지 해주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의 주소현 원장님, 책이 나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도와주신 이혜지 주간님, 편집의 전 과정을 전담해주신 이지예 편집자님께 특히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저자의 강의에 함께해준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함께 열심히 공부해준 그들이 없었다면 이 책은 결코 세상에 나올 수 없었다.

민법 공부를 처음 시작한 이 책의 독자들과 내 강의의 학생들이, 민법의 재미와 아름다움을 꼭 발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그 여정에 여러분의 조력자로서 함께하게 된 것을 큰 영광이자 기쁨으로 생각한다.

2024년 가을의 길목에서

저자 서울오